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준 형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준형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